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96 2026.9.21.



"센서 종류·외관보다 실제 기능" 품목분류 가른 결정적 차이

[이주의 초점]
관세청, 반도체 압력조절기·유리섬유 등 품목분류 결정 (4p)

[위클리뉴스]
'태양광 폴리실리콘·드론' 미 관세 대상 한눈에 확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핵심광물·첨단산업·고속철까지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 (7p)

[오피니언: 미국]
우회수입·강제노동 의심 땐 화물 보류… 달라진 미 통관 리스크 점검 (13p)

[판례 동향]
협정관세율의 적용시점과 입항전 수입신고의 한계에 관한 판례분석 (20p)

[품목분류 동향]
승부 요소 가미된 완구, '게임기(제9504호)'일까 '완구(제9503호)'일까 (29p)

[일본 관세 리포트]
일본 세관 2030 대전환: AI가 서류·X-ray 영상 분석 (41p)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김종호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9월 21일(통권 제2196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 O N T E N T S



<알립니다>
통권 제2197호는 10월 5일 발행됩니다.
▲9월 28일 : 휴간, ▲10월 5일 : 제2197호, ▲10월 12일 : 제2198호

이주의 초점

04 "센서 종류·외관보다 실제 기능"
품목분류 가른 결정적 차이

07 **Weekly News**

오피니언

13 **수출기업이 점검해야 할 미 통관 리스크 ②**

김태주 대표관세사·**권혁민** 관세사
KPMG 관세법인

우회수입·강제노동 의심 땐 화물 보류···
달라진 미 통관 환경

관세행정실무해설

18 **질의응답사례**

도자기 용기의 수입요건

판례동향

20 **관세판례해설**

협정관세율의 적용시점과 입항전 수입신고의 제한

품목분류동향

29 **품목분류해설**

승부 요소 가미된 완구, '게임기'일까 '완구'일까

39 **세번 바로잡기**

경도와 내구성 높인 고밀도화 목재의 HS Code

일본 관세 리포트

41 [일본 세관 2030 대전환]
AI가 서류·X-ray 영상 분석

"센서 종류·외관보다 실제 기능" 품목분류 가른 결정적 차이

관세청, 반도체 압력조절기·유리섬유 등 9건 분류기준 제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냉각가스의 압력을 조절하는 장비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함께 들어 있다면 어느 기능을 기준으로 품목분류 해야 할까. 유리섬유를 바늘로 얽어 만든 시트는 '매트'와 '직물'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까. 관세청이 반도체 장비와 유리섬유 등 품목분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센서의 종류나 제품의 외관만으로 분류하지 않고 실제 주된 기능과 제조공정,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열린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압력조절기부터 유리섬유 매트, 글라스 울 시트 등이 포함됐다.

■ 반도체 가스 압력조절기, 유량센서 있어도 '매노우스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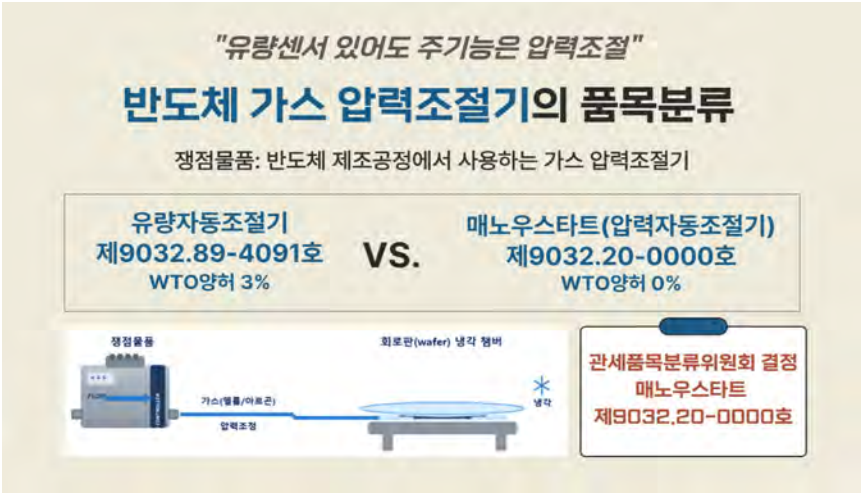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첫 번째 쟁점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압력조절기였다. 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인 제9032.89-4091호(WTO양허 3%)가 아닌 '매노우스타트(압력자동조절기)'인 제9032.20-0000호(WTO양허 0%)로 결정했다.

쟁점물품에는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들어 있다. 유량센서는 냉각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 흐름을 측정하지만, 압력센서는 가스 압력을 측정해 적정 수준으로 자동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품목분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장비의 주된 기능을 '유량 조절'이 아닌 '압력 조절'로 판단해 압력 자동제어·조정 기기인 매노우스타트(manostat)로 결정했다. 여러 종류의 센서가 장착됐어도 센서의 종류나 구성만 볼 것이 아니라 작동원리와 실제 주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장비 업계의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같은 유리섬유도 제조·결속 방식 따라 품목번호 달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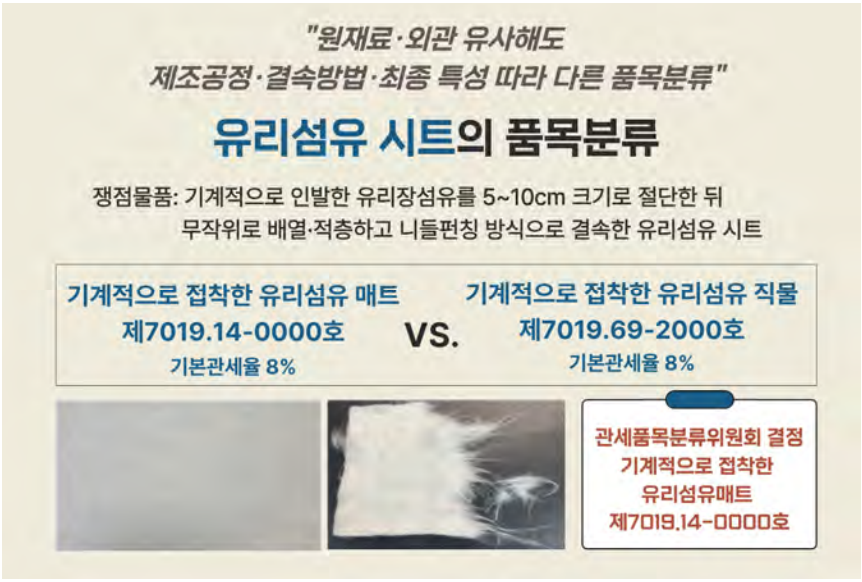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유리섬유 제품은 제조공정과 결속 방법이 품목분류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 품목분류위원회는 유리 장섬유를 기계적으로 작은 구멍에 일정 속도로 끌어당겨 연속적인 긴 가닥을 만든 후 5~10cm 크기로 자른 뒤 무작위로 배열·적층하고, 비늘로 섬유를 얽는 니들펀칭(needle punching) 방식으로 결속한 유리섬유 시트(EGNM, E-Glass Needle Mat)의 품목분류를 심의했다.

쟁점은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인 제7019.14-0000호와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직물'인 제7019.69-2000호 중 어느 호에 분류할지였다. 두 품목의 기본세율은 모두 8%다. 먼저 글라스 울(glass wool)은 용융된 유리를 원심분리 방식으로 섬유

화해 부피감 있는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제조·결속 방법 및 최종 형태가 쟁점물품과는 달라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품목분류위원회는 기계적 인발 방식으로 제조되고 섬유가 무작위로 배열·적층된 데다 니들펀칭 방식으로 결속된 점 등을 근거로 제7019.14-0000호의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로 결정했다.

제7019호 해설서도 소호 제7019.14호에 대해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mechanically bonded mat)'는 유리 스트랜드(glass strand)로 만든 평평한 강화 제품으로서, 수백 개의 평행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 스트랜드는 무작위로 배열된다.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에서 스트랜드(strand)는 박음질하거나 바늘로 꿰매어(needle) 합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은 원재료와 외관이 비슷한 제품이라도 제조공정과 결속 방법, 최종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PASTEL BRAND HERBAL INHALER	제3004.90-9900호(WTO양허 6.5%)
2	Basalt Fiber Needle Mat	제6806.90-9000호(기본 8%)
3	EGNM(E-Glass Needle Mat)	제7019.14-0000호(기본 8%)
4	Glass wool sheet	제7019.80-9000호(기본 8%)
5	Pressure Controller; 649B	제9032.20-0000호(WTO양허 0%)
6	VINYL HOUSE	제7326.90-9000호(기본 8%)
7	ELECTRICALLY CONDUCTIVE INK	제3215.90-9000호(WTO양허 6.5%)
8	SILASTIC RC-4 50P FD RUBBER ADDITIVE	제3824.99-8000호(WTO양허 6.5%)
9	INSTAPAK B MOLDING	제3907.29-2090호(WTO양허 6.5%)

편집: 관세청

그밖에 품목분류위원회는 글라스 울로 만든 시트를 단순 '글라스 울(제7019.80-1000호)'이 아닌 '글라스 울 제품(제7019.80-9000호)'으로 결정했다. 두 품목 모두 기본세율은 8%다. 관세청은 과거에는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이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됐지만, 2022년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이 각각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도록 개정된 만큼 관련 업계에 수출입신고 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글라스 울을 비롯해 품목분류 결정사항이 반영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은 9월 14일 관보에 게재됐다. | 김성은 기자 |

美 관세 '폴리실리콘·드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HTS-HSK 10단위 연계로 미 관세 대상 여부 확인 가능

미국이 태양광·반도체 원재료인 폴리실리콘·파생제품과 드론(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을 품목관세 대상에 추가한 가운데, 관세청이 해당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9월 16일 공개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의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를 10단위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를 발표한 바 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인 고순도 실리콘이다.

한국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인 잉곳과 웨이퍼, 태양전지 및 모듈에는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정부가 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으면 종량세가 추가될 수 있다.

● 미 관세 부과 대상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

	미국 HTS	한국 HSK	세율	시행일
1	3818.00.0020	3818.00-1000	15%	2026. 12.4.
2	3818.00.0040	3818.00-1000		
3	3818.00.0045	3818.00-1000		
4	3818.00.0050	3818.00-1000		
5	3818.00.0091	3818.00-2010 3818.00-2090		
6	8541.42.0010	8541.42-0000		
7	8541.42.0080	8541.42-0000		
8	8541.43.0010	8541.43-0000		
9	8541.43.0080	8541.43-0000		

아울러 8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무인항공시스템과 관련 부품 수입품에 232조 품목관세를 최대 100%까지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다만, 한국·일본·대만 등에는 15% 상한이 적용된다. 한국에서 생산한 무인기와 무인기용 도킹스테이션 및 부품,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무인기의 일부 부품에는 지난 9월 3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 밖의 무인기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1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품명 등 자세한 연계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 미 관세 부과 대상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부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

	미국 HTS	한국 HSK	세율	시행일
1	8504.40.9580	8504.40-3090 8504.40-4090 8504.40-5090 8504.40-9099	15%	2026.9.3.
2	8537.10.9170	8537.10-5010 8537.10-5090		
3	8806.21.00	8806.21-0000		
4	8806.22.00	8806.22-0000		
5	8806.23.00	8806.23-0000		
6	8806.24.00	8806.24-0000		
7	8806.29.00	8806.29-0000		
8	8806.91.00	8806.91-0000		
9	8806.92.00	8806.92-0000		
10	8806.93.00	8806.93-0000		
11	8806.94.00	8806.94-0000		
12	8806.99.00	8806.99-0000		
13	8807.10.0015	8807.10-0000	15%	2026.9.3. 2027.2.9. (민감하지 않은 특정 UAS 부품)
14	8807.10.0030	8807.10-0000		
15	8807.10.0060	8807.10-0000		
16	8807.20.0015	8807.20-0000		
17	8807.20.0030	8807.20-0000		
18	8807.20.0060	8807.20-0000		
19	8807.30.0015	8807.30-1000 8807.30-2000 8807.30-3000		
20	8807.30.0030	8807.30-1000 8807.30-2000 8807.30-3000		
21	8807.30.0060	8807.30-1000 8807.30-2000 8807.30-3000		
22	8807.90.9015	8807.90-1000 8807.90-2000 8807.90-9000		
23	8807.90.9030	8807.90-1000 8807.90-2000 8807.90-9000		
24	8807.90.9060	8807.90-1000 8807.90-2000 8807.90-9000		

※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미국의 HTS 품목번호와 한국의 HSK 품목번호를 연계해 제작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미국 수입세번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 관세당국의 권한입니다.

핵심광물·첨단산업·고속철까지 중앙아시아와 협력

한국이 핵심광물이 풍부한 중앙아시아와 손잡고 공급망 협력과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9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중앙아시아 첫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제조·기술과 현지 자원·시장을 결합해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산업, 산업협력 기반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광물자원에 한국의 가공·제련 기술을 접목한다. 한국수출입은행·아시아개발은행의 금융지원을 연계해 민·관·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IT·바이오 협력도 확대한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제약클러스터에 유전체 분석과 세포 보관 기능을 갖춘 국가 연구시설 '바이옴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2027년 하반기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 타당성조사를 시작한다.

산업협력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 차량 8편성(56량)을 추가 도입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타당성조사를 개시한다. 우즈베키스탄은 K-고속철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 2026년 5월부터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추가 도입을 요청한 결과다. 금융 분야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카자흐스탄의 5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Forte은행에 7,000만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를 제공한다. 현지 기업의 구매자금 조달을 지원해 국내 기계·장비와 소비재, 뷰티 제품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다솔 기자 |

라면 속 '건조대파' 농약 기준, 한국이 국제표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한 건조대파 농약기준이 국제표준이 되면서 라면 등 가공식품 수출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5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Codex Alimentarius) 농약잔류분과에서 식약처가 제안한 건조대파의 농약잔류허용기준 3종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살균제 '메트코나졸'은 1.5mg/kg, 살충제 '메타플루미존'은 3mg/kg, '플루벤디아마이드'는 7mg/kg까지 허용된다.

유럽을 중심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건조대파가 들어간 수출용 라면이 현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대파의 농약 잔류자료를 근거로 CODEX에 기준을 제안했다.

해당 기준은 2027년 7월 CODEX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건조대

파가 들어가는 라면 등 가공식품의 수출 과정에서 잔류농약 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통관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김다솔 기자 |

마운자로·위고비 불법반입 급증··· 불순물까지 검출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해외에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들어 5,000건을 넘어섰다. 세관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은 유효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미확인 불순물까지 포함된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9월 17일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인 1,189건의 4.2배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는 총 6,223건이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고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 순이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국내에 반입하려면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은 X-ray 검색과 개장검사로 해당 제품을 확인하고,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을 보류한 뒤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식약처는 6월 5일 비만치료용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관에서 적발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출처: 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반입된 비만치료제의 품질 문제도 확인됐다. 중앙관세분석소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이 세관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에 큰 편차가 있었다. 일부 제품에서는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불순물도 다수 검출됐다. 마운자로는 원칙적으로 2~8℃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지만, 분석 대상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인 콜드체인 없이 운송됐다. 해당 제품은 상표권자의 감정 결과 모두 위조품으로 판정됐다.

관세청은 현장 통관검사와 중앙관세분석소의 성분 분석을 연계해 유해 의약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고, 반입 경로별 검사와 불법 밀수입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베트남, '과일·채소' 수입검사제도 개편··· 통관 지연

베트남이 수입 식물성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체계를 개편하면서 한국산 신선과일의 현지 통관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관리 대상 수입식품 가운데 일반검사와 강화검사 대상 품목의 국가 식품안전 검사를 각 성·시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식물성 수입식품 역시 지역별 지정기관에서 식품안전 검사를 받게 됐다.

기존 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식물검역과 식품안전 검사 절차가 분리되면서 신선과일의 경우 식물검역은 기존 기관이, 식품안전 검사는 지방정부 지정기관이 각각 담당한다. 관련 서류도 각 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하노이지사는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실제 통관이 늦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안전 검사 신청 확인과 결과 통보를 기다리며 화물이 공항 창고에 수일간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온도 변화와 보관 기간에 민감한 신선과일은 상품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공항 냉장창고 이용 기간이 늘어나면 보관료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판매 가능 기간 단축과 납품 지연, 거래처 공급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노이지사는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지역별 식품안전 검사기관과 실제 처리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검사기관 운영일과 항공편 도착일 등을 고려해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현지 통관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5년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베트남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6억 3,493만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그중 농산물 수출 비중이 69.0%로 가장 높았다. 신선 농산물 중에서는 딸기, 배, 포도가 프리미엄 과일 시장에서 인기다. 베트남의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330억달러 가운데 한국은 6위로 11억 달러(3.3%)를 기록했다. | 김다솔 기자 |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로 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

정부가 9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재정경제부가 9월 18일 발표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에 따르면, 휘발유는 현행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의 유류세 인하율을 11월 30일까지 유지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9월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유가는 홍해 지역에서의 후티 반군 활동 확대와 호르무즈해협 긴장 고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9월 2주차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 김성은 기자 |

● 일간(좌) & 주간(우) 원유가격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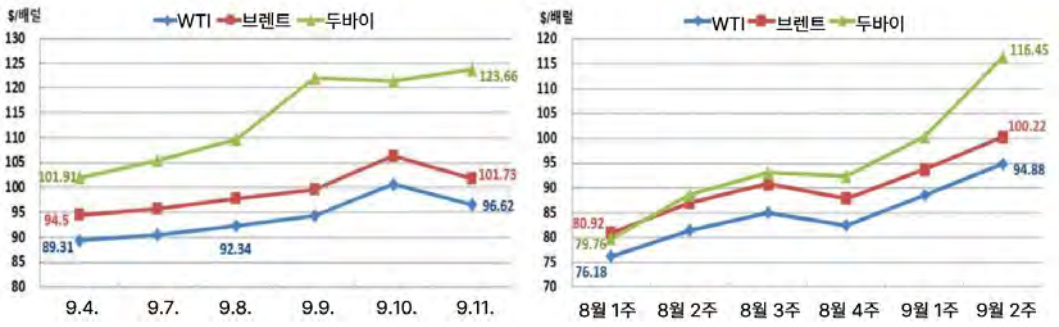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국 관세정책

수출기업이 점검해야 할 통관 리스크 ②

우회수입·강제노동 의심 땐 화물 보류···
달라진 미 통관 환경

김 태 주 대표관세사 · **권 혁 민** 관세사
KPMG 관세법인

한국과 미국의 통관 절차 비교

미국의 통관절차는 크게 수입신고(Entry)와 반출 이후에 관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청산(Release & Liquidation)이라는 두 단계로 나뉜다. 이 두 단계 사이 화물의 '반출 전 보류(Hold) 및 억류(Detention)'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는데, 미국의 '보류-억류' 체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특정 규제를 위반했다고 의심될 때,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화물 반출을 일시 중단하고 격리하는 행정 조치다.

보류는 CBP가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을 일시 정지한 상태라고 한다면, 억류는 법적인 공식 격리 조치로서 공식 억류 통지서(Notice of Detention)가 발송되며 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 반송되거나 압수될 수 있다.



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통관보류 제도는 「관세법」 제237조다. 이 조문은 세관장에게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관세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통관을 보류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통관보류 제도 또한 미국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그 대상이 상이하다.

미국 CBP의 대표적인 보류조치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CBP 통관 보류조치 주요 사유

구분	보류 유형	보류사유 상세 설명
1	매니페스트 보류 (Manifest Hold)	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하는 적하목록(Manifest) 데이터나 수입자의 보안신고(ISF, Importer Security Filing)에 오류나 누락된 경우에 발생하는 보류
2	상거래 집행 보류 (Commercial Enforcement Hold)	수입물품이 미국의 상거래 법률 및 무역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류(예: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원산지 허위/오인 표시,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의심 등)
3	통계적 검증 보류 (Statistical Validation Hold)	신고된 화물 데이터가 CBP의 과거 통계 데이터(평균값) 및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날 때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걸러지는 보류
4	PGA 보류 (PartnerGovernment Agency Hold)	미국 관세청(CBP)이 아닌, 미국의 타 정부 협력 기관(PGA)들의 수입 규제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요청으로 거는 보류 (우리나라의 수입요건)

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보류 사유 중 장단기적 보류 또는 억류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사유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주요 체크리스트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뤄 보고자 한다.

우회수입(Transshipment) 의심에 따른 통관보류 리스크

1. 우회수입 또는 원산지 우회

상업집행 보류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고, 최근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원산지 우회(Transshipment) 의심에 따른 보류다. 이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국가의 제품이 제3국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에 미달하는 가공(최악의 경우, 미가공 라벨 변경)만 거쳐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화물 단위에서 발령되는 보류조치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보류는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는다.

CBP의 타겟팅 시스템은 수출자의 생산능력, 수출 이력과 패턴, 수입신고 정보 등 가용한 정보를 근거로 개별 화물을 실시간으로 선별해 상업집행보류를 발령(실시간 선별 메커니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통관보류대상의 실시간 선별 메커니즘

이러한 '실시간 선별 매커니즘'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수석고문 소관 하에 있는 무역제조업정책실(OTMP,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에서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The Great Transshipment Scam'이라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8년 대중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이후 중국산 제품의 제3국 우회수출이 확대된 현상을 '대재편(Great Reallocation)'으로 명명, 40여 개국이 연계된 조직적 우회망으로 발전한 현상을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Shadow Transshipment Network)'로 설명했다. 위험국은 3단계로 구분되며, 한국은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과 함께 'Diversified Scale Leaders'로 불리는 Tier 1으로 분류됐다. 중국연계 물량 규모가 크고 산업기반이 다양하며 대미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국가군이라는 것이다. Tier 2(베트남, 태국 등 생산, 가공 허브), Tier 3(파나마, 캄보디아 등 소규모 우회수출 거점)와 구분된다.

즉, 보고서는 백악관이 한국을 중국산 물품의 주요 우회수입 경로로 정조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가 예고하는 우회수입 방지 실행 수단인 'Detective Border'[1]에 주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화물데이터, 경로이력, 품목분류, 소유관계, 생산능력 지표, 이상탐지, 이미지분석 기술을 통합하며, CBP의 AI 아키텍처가 이상탐지, 연결분석, 생산능력검증, 상호 대사검증(mirrored-flow verification) 기능을 하나의 예측 플랫폼으로 융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실시간 선별 메커니즘'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행정명령 14411의 강화된 수입자 정보수집 권한과 결합해 운용될 계획임이 명시돼 있다. **즉, 중국산 투입물 비중이 높거나 중국과 관련이 높은 품목은 향후 원산지 우회 의심에 따른 상업집행보류의 실질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다른 품목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 미국 CBP가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경감시 시스템

3. 전문가 자문 필요 영역

중국처럼 고관세율 국가의 원재료·부품의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은 미국 관세법상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검토 및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재료별 원산지와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 공정별 원가 및 부가가치, 생산설비·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중국산 핵심 부품이 최종 제품의 기능과 용도를 사실상 결정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CBP의 우회수입 단속이 단순 원산지 확인을 넘어 생산능력, 거래구조, 운송경로 및 신고정보 간 불일치까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생산량과 수출물량의 정합성, 중국 공급업체와의 연결관계 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관세 리스크가 큰 품목은 CBP 사전판정(Binding Ruling)을 통해 원산지 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강제노동 연루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 리스크

1. 강제노동과 반증가능 추정원칙

상업집행 보류의 또 다른 유형으로, 별도의 법률[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에 근거해 반증책임 자체를 수입자에게 전환하는 강력한 보류 제도가 있다. 미국 관세법 307조(19 U.S.C. §1307) 및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2022.6.21. 발효)은 신장위구르자치구산 물품 또는 UFLPA Entity List[2] 등재기업 생산물품에 대해 반증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적용한다. 즉, 수입자가 반대되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CBP 당초의 추정, 즉 강제노동 제품이라는 추정이 그대로 유지돼 물품이 억류되거나 수입이 거부되는 강력한 규제 방식을 의미한다.

2. 최근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확대 동향과 집행 규모

2025년 8월 19일 국토안보부 산하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FLETF, 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의 UFLPA 전략 갱신본은 Entity List에 78개 기업을 추가해 총 144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철강·구리·리튬을 포함한 5개 부문을 신규 고위험 부문으로 지정해 총 13개 부문으로 확대했다. 2026년 8월 3일자로는 추가 43개 기업이 등재돼 총 187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2) 수출통제 우려 기업 또는 단체의 명단.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 등을 규제하기 위한 거래대상자 목록.

특히 이번 확대에서 중요한 특징은 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 상당수가 반드시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소재한 기업은 아니라는 점이다.[3] 즉, 기업 소재지만으로 강제노동 방지 리스크를 판단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 내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장 지역의 원재료를 조달하거나 중국정부의 노동이전 프로그램 등에 관여한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 협력업체를 이용하거나 중국산 원재료·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도 공급망 상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CBP의 집행 규모 역시 상당하다. 2025년 8월 1일 기준 CBP는 UFLPA와 관련해 1만 6,700건 이상의 화물을 대상으로 약 37억달러 상당의 물품을 심사 목적으로 중지시켰으며, 이 가운데 1만건 이상, 약 9억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UFLPA가 단순한 정책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통관단계에서 상당한 규모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통관보류 & 수입거부 리스크 방지를 위한 회사의 자율점검 필요성

우리 기업들은 UFLPA 13개 고위험 부문 및 187개 등재기업 명단을 원재료→중간재→완제품에 이르는 자사 공급망과 대조하고, 직접 거래처가 아니더라도 원재료 공급업체 단계에서 연결될 가능성까지 실사 범위를 넓히며, 필요시 실사 전문 자문사를 활용해 등재된 기업과의 간접적 연관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억류 발생 시 즉시 CBP에 반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빙, 생산공정 기록, 노동조건 관련 자료 등 소명자료를 사전에 구비해 통관보류 리스크가 식별되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입증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통관시점에 후속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특히 큰 영역이다.

다음 호[제2197호(10.5. 발행)]에서는 '수출기업이 점검해야 할 미 통관 리스크 ③편'으로 백악관 행정명령 14411로 달라진 수입자 및 세관보증 요건 강화 조치와 그에 따른 통관 지연 리스크를 알아보겠다.

3) ①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채굴·제조한 기업, ②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의 노동이전 등에 관여한 기업, ③ 신장위구르자치구산 원재료를 조달하는 기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됨.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요건 분야

반찬 담는 용도의 도자기 용기를 수입할 때 확인해야 할 요건이 있을까요?

수입물품의 관세율,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문의한 물품이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의 '기타'에 해당한다면 제6912.00-109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품목분류 분야

수영장이나 수조 등에 쓰이는 수중청소기는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만약 문의하신 물품이 '진공청소기(Vacuum cleaners)'에 해당된다면 제8508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고, 출력, 용량 등에 따라 이하 세번에 세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공청소기(Vacuum cleaners)'의 '전동기를 갖춘 것'의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의 '로봇형'에 해당된다면 제8508.11-1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기를 갖춘 것'의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8508.11-9000호에 분류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8508호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85류의 주 제1호 라목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를 분류한다. 건식인지 습식인지에 상관없으며, 회전식 솔·양탄자 두드림 장치·다기능 흡입 헤드와 같은 부속품이 함께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진공청소기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지가 포함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여과이다. 흡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직접 장착된 터빈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먼지와 그 밖의 물질은 내부나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나 용기에 모인다. 이때 흡입되어 걸러진 공기는 모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다 ··· <중략> ··· 이 호의 진공청소기는 부속 장치(솔·광택기·해충박멸 스프레이 등의 부속품)나 호환성 부분품(양탄자 장치·회전식 솔·다기능 흡입 헤드 등)과 함께 제시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함께 제시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보통 본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종류와 수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본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품목번호			품명
8508			진공청소기
8508	1		전동기를 갖춘 것
	11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11	1000	로봇형
	11	9000	기타

원산지 분야

HS Code 제5609.00-9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물품에 한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제5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원산지 표시 비대상에 해당되며, 원산지 표시 비대상 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별표 8]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HS 류별	품목 코드
제56류	제5601호, 제5602호, 제5603호, 제5604호

협정관세율의 적용시점과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김 민 주 | 부산세관

1. 들어가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때는 원산지 요건과 함께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가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시기에 따라 협정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한 날짜를 경계로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물품은 운송과 통관일정의 미세한 차이가 상당한 관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시기에 따라 협정관세율이 달라지는 거래에서 선박이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도착했거나 낮은 세율의 적용기간 중 입항전 수입신고를 마쳤다면 어느 시기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를 판단하려면 물품의 물리적 이동과 「관세법」상 수입의 의미를 구분하고,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되는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두34241 판결은 호주산 칩용 신선감자의 협정관세율 적용시점이 문제 된 사건이다. 원고는 0%의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2021년 4월 30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했으나, 물품을 실은 선박은 다음날(2021년 5월 1일) 입항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에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 5월 1일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141.8%)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협정에서 정한 수입의 의미와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2. 관련 법령

■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중략> ···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 「**관세법**」

제244조(입항전 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중략>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①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 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 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협정관세율) ⑫ 법 제4조 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3과 같다.

3. 판례분석

1) 사건 개요와 소송의 경과

원고는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칩용 신선감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117.5톤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 사건 물품은 2021년 4월 9일 선박에 적재됐고, 해당 선박은 호주 멜버른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항을 경유한 후 2021년 5월 1일 17시 5분경 부산항 신항에 입항했다. 원고는 입항 전날인 4월 30일 한·호주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해 입항전 수입신고를 했다.

당시 호주산 칩용 감자는 수입시기에 따라 협정관세율이 달라지는 품목이었다. 매년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는 한·호주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됐고, 이 사건 물품 수입연도인 2021년의 경우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는 141.8%의 세율이 적용됐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발췌 ●

품목번호	품 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1100000	종자용	60.8	30.4	0.0	0.0	0.0	0.0	0.0	0.0
0701900000	기타								
	- 칩용	0.0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141.8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0.0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121.6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0.0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101.3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0.0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81.0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0.0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60.8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0.0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40.5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0.0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20.2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0.0
	- 기타	304.0	304.0	304.0	304.0	304.0	304.0	304.0	304.0

피고 인천세관장은 실제 입항일인 2021년 5월 1일에 해당하는 협정관세율(141.8%)을 적용해 2022년 5월 24일 원고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한·호주 FTA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영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포함되고, 선박이 4월 30일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왔으므로 이날 이미 물품의 수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협정은 「관세법」에 우선해 적용되므로, 협정상 영역을 기준으로 수입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물류 적체로 입항이 지연된 사정을 들어 비례의 원칙 위반도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이 사건의 판단은 협정과 국내법의 적용관계, 「관세법」상 수입의 의미, 입항전 수입신고의 제한, 운송지연 사정의 고려 여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2) 협정과 국내법의 적용 관계

원고 주장의 출발점은 FTA가 국내 「관세법」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정의 우선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먼저 협정이 해당 용어에 관해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한·호주 FTA는 시기별 협정관세율을 정하는 기준인 '수입'에 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수입의 정의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었다. 이 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어의 정의에 관해 「관세법」 제2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정하지 않은 사항 역시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협정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용어의 경우 상충되는 법문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체계에 따라, 이 사건에서 수입의 의미를 「관세법」 제2조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협정에 별도의 정의가 없는 이상, 국내법의 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곧 협정의 우선적용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협정상 영역에 관한 정의만으로 「관세법」상 수입의 의미나 수입신고 절차까지 달라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일부 발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이라 한다]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제2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또는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호주 FTA'라 한다)은 협정관세율을 시기별로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이란 용어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한·호주 FTA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의 적용에 관하여 '수입'의 의미는 관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과 「관세법」상 수입의 구별

그렇다면 다음으로 문제 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의 의미가 무엇인지다.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형태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따른 구속에서 벗어나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관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외국물품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도착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 내국물품이 되고, 그때 「관세법」상 반입에 따른 수입이 이뤄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선박이 특정 해역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재 물품의 법적 지위가 내국물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일부 발췌 ●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65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선박의 위치만이 아니다. 물품이 「관세법」상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수입신고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한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일은 그 자체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수입시점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4) 세율 인상이 예정된 물품의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원고가 4월 30일에 이미 입항전 수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도 별도의 검토 대상이다. 「관세법」은 선박이 입항한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출항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물품에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물품이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고된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하여 그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했다.

이 사건 물품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경우 한·호주 FTA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되지만, 5월 1일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는 물품이었다(실제 선박이 입항한 날도 5월 1일이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입항이 이뤄진 5월 1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141.8%의 협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일부 발췌 ●

한편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제16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8조 제1항),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된 후에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제241조 제1항, 제243조),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4조 제1항).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제1항),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

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참조).

즉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기에 앞서, 입항전 수입신고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5) 운송 지연과 비례의 원칙에 관한 판단

원고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부산항 신항의 물류 적체로 입항이 늦어진 점도 주장했다. 불가피한 운송지연과 관련해 입항전 수입신고의 유효성을 인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일정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구체적인 운항 경위와 지연 사유를 검토했다.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 도달한 때가 이미 5월 1일 14시였고, 늦게 도착한 이유도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이 아닌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운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 경제적 사정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항만의 화물적체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5.6.20. 선고 2024누44893 판결 일부 발췌 ●

살피건대,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 도달한 시점은 2021.5.1. 14:00로 이미 2021.4.30. 자정 기준 14시간이 경과하였던 점(을 제8호증), 이 사건 선박이 부산신항에 늦게 도착한 이유는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라 선장이 이 사건 선박을 평소 속도보다 저속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 경제적 사정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부산신항의 화물적체 현상이 심각하고 장기화되어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7호증, 을 제9, 10호증),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입법 취지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취지를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으며,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운송지연을 일률적으로 평가한 판단으로 확대하기보다,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지연의 원인과 예측 가능성 등을 토대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시사점

첫째, 협정관세율의 적용기간도 거래단계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 사건은 호주산이라는 원산지 자체가 부정된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동일한 원산지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 중 어느 기간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시기에 따라 협정관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준비와 함께 해당 연도의 협정세율표 및 적용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를 계획할 때는 해당 연도와 기간의 세율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운송지연으로 적용기간이 달라질 가능성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입항전 수입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입항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이며, 이를 활용하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세율 변경일이 임박한 거래에서는 먼저 입항전 수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확보됐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예상 입항일과 실제 운항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에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이 적용되는지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매·물류·통관담당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선적 당시의 도착 예정일만 기준으로 신고를 준비할 경우, 경유지 체류나 항만 혼잡 등으로 일정이 변경됐을 때 세율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칠 수 있다. 특히 낮은 세율의 적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맞춘 운송계획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통관 준비기간과 운송 일정의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일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이다.

셋째, 운송지연의 사정은 관련 규정과 증빙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운송이 지연됐다면 지연 사유의 명칭만으로 법적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코로나19라는 일반적 상황과 함께 실제 운항속도, 영해 도달 시각, 화물 적체의 예측 가능성 등을 두루 검토했다. 따라서 지연 경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운항기록, 도착 예정일의 변경 통지, 항만 혼잡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증빙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실관계에 관한 증빙과 예외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는 구별돼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예외나 입항전 수입신고 후 일정 기간 내 도착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기별 협정관세의 적용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각의 규정이 어떤 요건 아래 어떤 효과를 부여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운송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세율 변경의 효과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5. 맺음말

대상 판결은 한·호주 FTA에 별도의 수입 정의가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하고, 세율 인상이 예정된 물품에는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했다는 사정과 낮은 세율의 적용기간 중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한 0%의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었다.

협정관세율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요건, 세율의 적용기간, 수입신고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세율이 달라지는 경계 구간의 거래에서는 운송 일정과 신고 가능 여부를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 대상 판결은 협정관세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법정 요건을 거래와 통관의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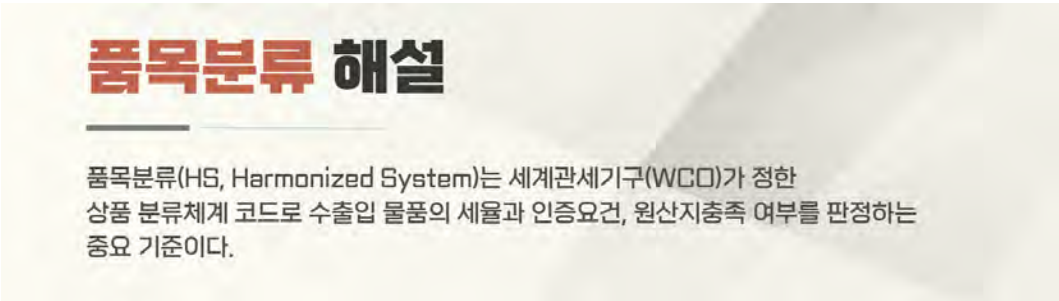

승부 요소 가미된 완구, '게임기'일까 '완구'일까

- 제9503호(그 밖의 완구)와 제9504호(전자식 게임기) 품목분류 쟁점

심 난 섭 | 평택세관

Ⅰ. 개요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적 변화 속에서 사회 현상과 제품 소비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완구 시장이다. 전통적인 방식의 단순한 아동용 완구에서 교육완구, AI완구가 시장을 점유하고 향후에는 AI와 기계적, 전자적 요소 접목으로 완구시장은 폭넓게 다변화하며 고급화될 것이다.

완구시장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자의 재편이다. 전통 완구 시장에서는 유아, 아동 대상이 다수를 차지했다면, 현대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키덜트' 시장이 완구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골드키즈(Gold Kids)[1] 현상에 따른 고가의 프리미엄 완구나 교육용 완구 선호도가 높아졌다. 매체 '캐릭터 완구신문'에 따르면 종류별로는 단순한 놀이보다는 스퀴시·힐링 완구 같은 감성적 안정을 주는 촉감완구나 피규어·카드 등 캐릭터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기반의 수집 가치가 있는 컬렉터블(Collectible) 품목의 소비량이 늘고 있다.

현대의 완구 시장은 '골드키즈'와 '키덜트' 현상에 따라 프리미엄 완구와 AI, 음성인식, 전자기술 등과 감성적인 접근의 융복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AI 기술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대에서 완구와 AI 등 기술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이런

1) 저출생 현상 속에서 귀하게 자란 외동아이를 왕자나 공주처럼 최고급으로 키우려는 양육 및 소비 트렌드

융복합화 현상은 품목분류의 쟁점을 만든다.

여기에서는 완구의 여러 가지 쟁점사항 가운데 제9504호의 게임기 중 '전자식 게임기'와 제9503호 '그 밖의 완구'와의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제9503호의 '오락(재미와 즐거움)'과 제9504호에 분류되는 '게임', '승부' 요소가 결합된 "경쟁(승부, 게임)을 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완구"는 품목분류에서는 호와 호의 경계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 겹치는 부분에 대한 품목분류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것이다.

최근 쟁점이 됐던 완구 '부토버스터 배틀세트'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을 통해 '게임 요소가 가미된 완구' 또는 '전자 게임기'의 품목분류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Ⅱ. 쟁점 사례

1. 쟁점물품: 부토버스터 배틀세트(BUTTOBUSTER BATTLE SET KOREA VER)

1) 물품 개요

컨트롤러를 통해 로봇을 작동시켜 단독으로 혹은 최대 4인까지 전투 놀이를 즐기기 위한 물품으로 외포장에 '품명: 완구', '사용연령: 6세 이상' 등을 표시함.

로봇 본체 2개, 피규어 2개, 컨트롤러 2개, 스티커 2개, 배틀 경기장 1개, 제품설명서 1개가 지재 박스에 세트로 소매 포장돼 있음.

2) 물품 이미지 및 구성요소별 기능





- 컨트롤러: L 컨트롤러를 흔들면 로봇의 왼팔이 나가고, R 컨트롤러를 흔들면 로봇의 오른팔이 나감.
  * 컨트롤러에서 발생하는 2.4GHz 대 전자파 신호를 이용, 로봇과 페어링해 조작

- 로봇: 파일럿 피규어를 탑승시켜 상대 로봇과 배틀하는 본체로, 전원버튼을 ON으로 하면 컨트롤러와 무선으로 연결됨.

- 파일럿 피규어: 로봇에 장착되는 피규어

- 배틀 경기장: 종이 재질의 배틀 경기장

3) 사용 방법

본체에 파일럿 피규어를 장착→로봇과 컨트롤러를 무선으로 페어링→컨트롤러를 위아래로 흔들어 로봇의 펀치를 움직이게 함.
* 2~4개의 로봇이 모여야 배틀이 가능하며, 상대의 펀치에 맞아 피규어가 튀어나오면 패배

1인용(챌린지 모드+오토 파일럿 모드), 2인용(배틀 모드), 2~4인용(배틀 로열 모드) 등 다양하게 경기하며 놀이함.



피규어 장착 전



피규어 장착



배틀 상황

2. 쟁점사항

본 물품의 쟁점사항은 컨트롤러를 통해 로봇을 작동시켜 단독~최대 4인까지 전투 놀이(게임)를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을

(갑론) 세트·아웃피트로 된 그 밖의 완구로 봐 제9503.00-3700호로 분류할지

(을론) 전자식 게임기로 봐 제9504.90-2000호로 분류할지 여부다.

3. 품목분류위원회 논의 사항

1) 갑론: 제9503.00-3700호에 분류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구'에는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중략> ··· 이 호의 완구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며,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예: 천사·로봇·괴물)"를 예시하고 있음.

본 물품은 로봇과 페어링된 컨트롤러를 통해 로봇을 조작해 승부를 가리는 게임적 요소도 일부 있으나 작동 방식 및 형태 등을 고려하면 본질적 특성은 '완구'에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로 분류함.

2) 을론: 제9504.90-2000호에 분류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table or parlour game)(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HSK 제9504.90-2000호에는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음.

■ **제9504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4) 카지노용이나 실내게임용의 특수 테이블[예: 룰렛(roulette)용이나 모형 경마용] ; 카지노용 갈퀴 등
(5) 탁상용 축구용구나 이와 유사한 게임용구
(6) 실내오락장·카페·유희장 등에서 사용하는 기교나 기회를 겨루는 경기용의 코인·지폐·은행 카드·토큰·그 밖의 지불수단으로 작동되는 기계(예: 권총연습용의 기계나 여러 가지 형태의 핀테이블)
(7)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모터와 전기기계적 장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중략> ···
(9) 슬롯레이싱모터카(slot-racing motor car)와 그 궤도로 구성되는 세트로서 경기용의 특성을 갖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본 물품은 건전지를 삽입한 2개의 전투로봇과 컨트롤러를 페어링해 2인 이상의 사용자가 로봇전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테이블이나 실내에서 컨트롤러로 로봇을 이동시키거나 펀치동작을 해 상대방 로봇 안의 사람 형상 피규어를 날려보내면 이기는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는 게임용구로 전자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물품임.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전자식 게임기'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90-2000호에 분류함.

4.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갑론) 제9503.00-3700호에 분류

Ⅲ.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해설 및 시사점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를 포함하고 있어, 제9504호의 용어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 ··· <후략>'에 비해 폭넓게 더 많은 완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동안의 전자방식과 게임(겨루기)요소가 가미된 물품들에 대해 품목분류 결정이 제9504호와 제9503호를 번복했다. 이런 혼동은 품목분류 심사 결정과정에서 제9504호 중 HSK 제9504.90-2000호에 '전자식 게임기(Electronic games)'가 특게됐기 때문인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물품은 로봇과 페어링된 컨트롤러를 통해 로봇을 조작하는 전자방식과 승부를 가리는 게임적 요소가 있으므로 제9504호로 볼 수도 있는 물품이다. 그 전에 결정됐던 물품들을 보면 '전자방식'과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9504호에 결정됐다. 하지만 품목분류위원회는 "로봇과 페어링된 컨트롤러를 통해 로봇을 조작해 승부를 가리는 게임적 요소도 일부 있으나 작동방식 및 형태 등을 고려하면 본질적 특성은 '완구'에 있다"고 결정했다.

2025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은 전자식으로 게임적 요소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이 완구에 가깝다면 완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전에 결정된 제9504호의 몇 가지 사례가 제9503호로 변경됐다. 제9504호가

WTO 협정세율로 0%를 적용받았고, 세관장확인대상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업체는 제9503호에 분류되면서 관련 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를 한층 더 가미하기 위해 게임방식(승부)이 적용된 완구라 하더라도 작동방식 및 형태 등을 고려해 본질적인 특성이 제9503호에 있는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래는 변경 고시된 제9503호와 제9504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시크릿 셀카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1-70호(2021.12.28.)]

1) 품명 및 종전 공문

품명	종전 공문
시크릿 셀카폰 ; JJ CELL ;; 중국  	품목분류3과-2588 (2015.9.17.)

2) 물품 설명

홀로그램 뷰어를 티아라폰 케이스에 끼워 10가지 시크릿 쥬쥬 영상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휴대폰 모양의 장난감으로, 티아라 장식(3종)과 터치펜 등이 하나의 포장형태로 제시됨.

-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9504.50-9000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9503.00-3919호

3) 변경 사유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 기능이 **비디오 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제9503.00-3919호로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크릿 3D 티아라폰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2024.7.29.)]

1) 품명 및 종전 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시크릿 3D 티아라폰 	품목분류3과-7405 (2021.12.28.)
2	스티커 체인지폰+핸드백 ; SOFY RUBY SMART SHPONE(SR-HP) 	품목분류3과-1981 (2019.3.12.)
3	시크릿 셀카폰 ; JJ CELL ;; 중국 	품목분류3과-2588 (2015.9.17.)

2) 물품 설명

휴대폰을 모방한 완구와 비디오게임이 가능한 기기 등

-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9503.00-3919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9504.50-9000호

3) 변경 사유

완구와 비디오게임 기능 중 본질적 특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해 최종호인 제9504.50-9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3. 알까닭 등 완구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15호(2025.3.24.)]

1) 품명 및 종전 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Electronic Arcade Basketball(GDP802) 	품목분류3과-4502 (2018.8.31.)
2	완구 : 쉿! 개조심 	품목분류3과-4885 (2021.8.20.)
3		품목분류3과-4888 (2021.8.20.)
4	티라노사우루스 룰렛게임 	품목분류3과-720 (2021.1.28.)
5	알까닭 	품목분류3과-4887 (2021.8.20.)

2) 물품 설명

유희를 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완구

-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9504.90-2000호(①~③), 제9504.90-3000호(④, ⑤)

-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9503.00-3700호(①~⑤)

3) 변경 사유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제9503.00-3700호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앞서 언급한 제2021-40호부터 제2025-15호까지

변경고시 사항을 보면 그동안 제9504호에 분류되던 '휴대폰을 모방한 완구'와 '비디오게임이 가능한 기기 시크릿 셀카폰'이 제9503호로 분류되다가 다시 제9504호로 변경됐다. 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완구와 비디오게임 기능 중 본질적 특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해 최종호인 제9504.50-9000호에 분류"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 물품을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해 제9504호로 분류한 것이다.

이번 '부토버스터 배틀세트'를 제9503호에 분류하면서 변경고시한 물품의 경우는 전자적인 방식과 게임(승부)을 하더라도 제9503호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 **제9503호 용어 및 해설서**

95.03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 <중략> ···

(D) 그 밖의 완구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위의 제품들 중 어떤 것(완구용 무기·공구·정원세트·장난감 병정 등)은 흔히 세트(sets)로 되어 있다. 어떤 완구(예: 전기다리미·재봉기·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use)"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한다.

■ **제9504호 용어**

95.04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
9504.20 -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9504.30 -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9504.40 - 오락용 카드
9504.50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9504.90 - 기타 ··· <중략> ···
9504.90-2000 - 전자식 게임기

Ⅳ. 시사점

이번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은 자칫하면 혼동될 수 있는 제9503호에 분류되는 물품과 제9504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구분점을 정리해준 것으로 보인다.

제9504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 '전자식 게임기'란 "컴퓨터 게임 또는 비디오게임이라고도 하는 전자 게임, 컴퓨터 회로에 의해 작동되는 모든 대화형 게임"이라고 사전[2]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전기식으로 작동된다 하더라도 전자식 게임기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식 게임기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비디오게임 콘솔, 비디오 게임→개인용 컴퓨터 게임→소형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휴대용 게임기(예: 닌텐도, 게임보이)→모바일 게임→대규모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 순으로 볼 수 있다.

제9503호와 제9504호의 용어에 충실한 품목분류가 필요하며, HSK 전자식 게임기의 범주를 넘어서는 완구와 구분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요약)
(정의) 컴퓨터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이라고도 하는 전자 게임, 컴퓨터 회로에 의해 작동되는 모든 대화형 게임
(발전과정) 비디오게임 콘솔, 비디오 게임→개인용 컴퓨터 게임→소형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휴대용 게임기(예: 닌텐도, 게임보이)→모바일 게임→대규모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

경도와 내구성 높인 고밀도화 목재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자연이 내어준 가장 훌륭한 건축자재이자 생활 소재인 '나무'. 하지만 천연 목재는 수분에 취약하고 강도가 균일하지 않으며, 외부 충격에 쉽게 변형된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이러한 목재의 아쉬움을 물리적으로, 화학적 기술로 극복해 낸 소재가 바로 '고밀도화 목재(Densified Wood)'다. 고밀도화 목재란 일반적인 나무에 뜨거운 열과 강력한 압력을 가해 조직을 촘촘하게 압축하거나, 기공 사이에 합성수지 등을 깊숙이 함침시켜 굳혀낸 가공 목재를 말한다. 이 과정을 거친 나무는 본래의 성질을 넘어 금속이나 플라스틱에 버금가는 경도와 내구성을 띠게 되며 특수 산업용 부품이나 고급 바닥재, 음향기기 등에 주로 쓰인다.

이렇게 **조직이 압축되고 화학물질이 더해진 나무를 여전히 순수한 '나무'로 취급할 수 있을까?** 다음 사례로 확인해 보자.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대나무를 스트립상으로 절단 후 스팀, 탄화, 건조 후 페놀수지로 함침하고 고온에서 가압한 양 측면에 길이 방향으로 홈이 나있는 갈색의 프로파일 모양의 외장용 목재로, '성형목재'를 분류하는 제4409.21-0000호로 신고했다.

제44류 주 제2호에서는 '고밀도화 목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이 류에서 '고밀도화 목재'란 **화학적·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합한 것은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밀도나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

제4413호의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이 호에 분류하는 고밀도화 목재(densified wood)란 밀도나 경도(硬度)를 증가시키고 기계적 강도나 내화학약품성이나 전기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화학적 처리를 한 목재이거나 물리적 처리를 한 목재이다. 어떤 고밀도화 목재는 원목이거나 여러 층이 접착되어 있는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층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도록 접합처리를 보통 이상으로 충분히 하여야 한다."

참고로, 제4413호 해설서에서는 고밀도화 목재를 2가지 주된 공정으로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주입법(impregnation)에 목재에다 일반적으로 열경화성 수지를 많이 침투시키거나 용융금속을 침투시키는 것이다.
>
> ··· <중략> ···
>
> 압축법(densification)은 목재의 세포를 압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 이것은 강력한 수압기나 롤러(roller) 사이에 횡으로 압축시키거나 고압솥 내의 고온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압축시켜 만든다. 고밀도화 목재는 밀도가 1.4g/㎤ 정도이다."

일반적인 대나무의 평균밀도는 0.8g/㎤이다. 본 물품은 대나무에 수지를 함침해 가압해 밀도를 1.2g/㎤까지 높인 고밀도화 목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물품을 고밀도화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4413.00-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OF BAMBOO	제4409.21-0000호 FCN1 1.6%	Densified wood in profile shapes	제4413.00-0000호 FCN1 8%

[일본 세관 2030 대전환] AI가 서류·X-ray 영상 분석

세관 전용 생성형 AI 구축··· 드론·우주선물질로 검사 기술 고도화

[※ 본 컨텐츠는 본지 제2195호(2026.9.14. 발행) '일본 관세리포트'에서 이어집니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세관 중장기구상 2030'의 네 가지 변혁 가운데 세 번째로 'AI 기반 디지털 전환', 네 번째로 '인재·조직 전환'을 제시했다. 앞서 살펴본 국경관리와 협력관계 전환이 화물·여행객을 관리하는 범위와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두 분야는 이를 뒷받침할 기술·시스템과 조직을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류심사부터 X-ray 판독까지··· AI 활용 전면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의 적용 범위다. 관세국은 AI를 통관서류 심사와 위험분석은 물론, X-ray 영상 판독, 수입 사후조사 등 세관업무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국 총무과에 '디지털기반총괄실(가칭)'을 신설해 첨단기술 활용을 뒷받침할 디지털 기반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30년대 초까지 관련 기반을 구축한다.

AI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대조해 세관직원에게 심사할 항목을 짚어주고, 축적된 자료에서 밀수처럼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 검사대상 선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제안보와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1]에 관한 데이터 분석에도 AI가 쓰인다. 화물검사에서는 국제표준에 맞춰 X-ray 검사영상 형식을 통일하고, 영상 데이터를 축적해 AI 분석에 활용한다. X-ray 영상을 분석하는 AI 모델을 도입해 직원의 판독과 판단도 지원한다.

세관업무에 특화된 생성형 AI도 도입한다. 단기적으로 관세·통관 분야의 전문지식과 업무절차를 학습한 '세관 생성 AI 플랫폼(AIPF·가칭)'을 구축해 지식 공유와 업무통계 자동 작성 등 업무 자동화 및 분석 고도화에 활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 등을 폐지하고, NACCS를 통한 전자 신청을 원칙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자화된 첨부서류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넓힌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폐기승인 신청은 NACCS의 화물정보와 연계해 민관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AI와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도 강화한다. 생체인증과 백업 기능 등 보안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수출입·항만정보처리시스템(NACCS, Nippon Automated

1) TBML(Trade-Based Money Laundering): 범죄수익의 불법적인 출처를 정당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무역거래를 이용해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을 비롯한 세관 관련 시스템의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복구 기능을 높인다. 관련 법령과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X-ray·드론 넘어 '뮤온'까지··· 검사기술 고도화

관세국은 대형 X-ray 검사장비와 X-ray CT 스캔 검사장비 등 고성능 장비를 전국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일반 X-ray가 검사대상의 평면 투과영상을 제공한다면, X-ray CT는 여러 방향에서 얻은 영상을 조합해 내부 구조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물품이 겹쳐 있거나 복잡하게 포장된 경우에도 내부 형태와 위치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상 감시·단속에는 항공 드론과 수중 드론을 투입해 업무 무인화를 추진한다. 감시카메라에도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적인 연구과제 중 하나는 '뮤온'을 활용한 컨테이너 검사다. 뮤온은 우주선(宇宙線·cosmic ray)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성돼 지상까지 도달하는데, 두꺼운 물질도 통과한다. 물체를 통과하는 뮤온의 궤적과 분포 변화를 측정하면 내부 구조를 비파괴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고, 별도의 방사선 발생장치도 필요하지 않다. 관세국은 뮤온을 해상 컨테이너화물 검사에 적용해 불법약물과 폭발물 등을 찾을 수 있는지 연구할 계획이다.

● 뮤온을 활용한 화물검사 원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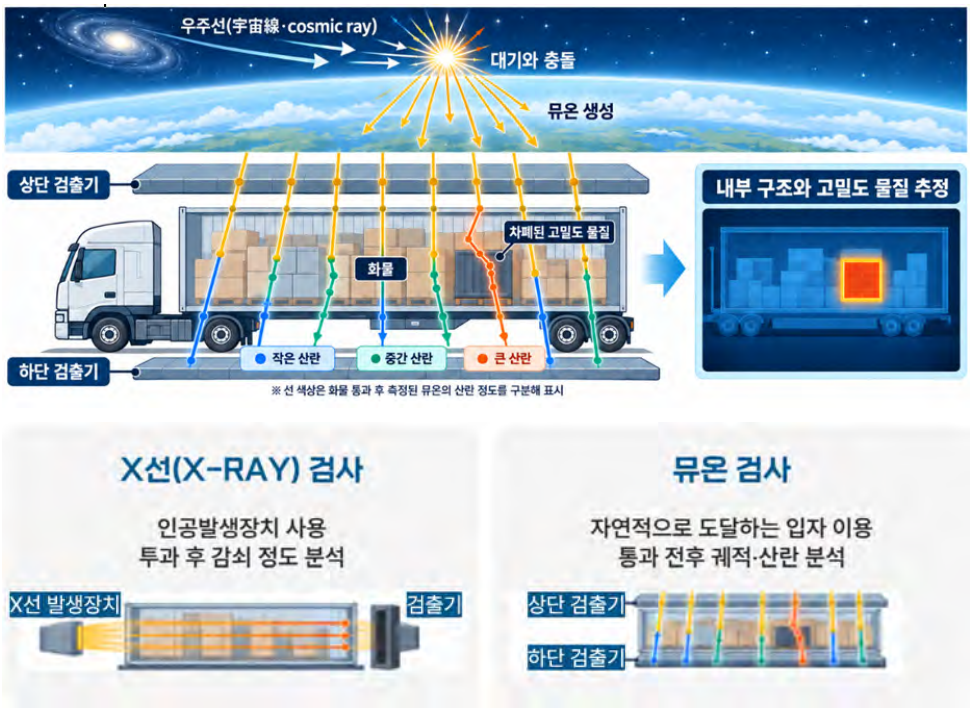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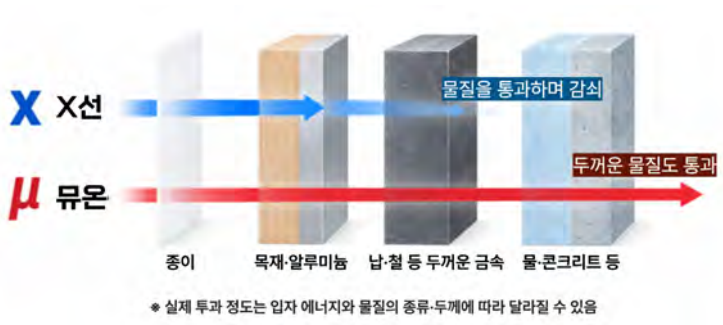

2026 세계관세기구 테크놀로지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뮤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첨단기술 운용할 전문인력 확보··· 통관심사는 전국 단위로

AI와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인재 육성과 채용 방향도 달라진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AI·첨단기술을 교육하고, 기존 데이터과학 교육에 관리자·자기계발 교육과 대학 위탁교육을 연계해 전문가 수준까지 역량을 높인다. IT와 첨단기술, 데이터과학, 화학분석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도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기술을 세관업무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통관심사도 개별 세관 중심에서 전국 단위의 공동 처리체계로 바뀐다.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특정 세관에 집중된 심사업무를 다른 세관이 분담함으로써 세관 간 업무량을 고르게 맞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심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도 AI·첨단 검사장비 확충 예정

일본이 추진하는 이 같은 방향은 한국 관세청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확인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의 공급망 위험도를 분석하는 AI 선별모델과 수출입가격 왜곡·불법 외환거래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의 데이터와 위험정보를 연계한 수입물품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X-ray 판독데이터 표준화와 AI 기반 컨테이너 밀수품 자동선별 기술을 개발하고, 3D X-ray 검색기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검사장비 확충과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화도 추진한다.

'세관 중장기구상 2030'은 급증하는 물류·인적 이동과 확대되는 세관 역할 속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세관업무를 고도화·효율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일본 관세국은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진척도를 점검하면서 기존 세관업무를 중장기적으로 개혁해 나갈 방침이다. **| 강보람 기자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